

2013년도 문화재위원회

## 제11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3. 11. 27(수), 14:00 ~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참 석 자 : 김학범, 류제현, 백인성, 이광춘, 이상필,  
이홍식, 이재근, 정종수, 이두표, 전영우

문 화 재 위 원 회

# 목 차

## 【심의사항】

1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생태·문화 휴게공간 조성	공개
2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육담폭포 우회탐방로 개설	공개
3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가설선착장 조성	공개
4	「남생이」 유전적 특성과 증식기술 연구를 위한 포획 및 사육	공개
5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	공개
6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북측선착장 보수·보강	공개
7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내 잠수정 운항기간 연장	공개
8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내 풍력발전단지 조성	공개
9	「고양 송포 백송」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공개
10	「포항 뇌성산 뇌록산지」 천연기념물 지정	공개
11	「포항 뇌성산 뇌록산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공개
12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주변 새연교 경관조명 설치	공개
13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주변 경작지 진입로 설치	공개
14	「무등산 주상절리대」 내 훼손 탐방로 정비사업	공개
15	「밀양 월연대 일원」 주변 밀양강 하천 환경 정비사업	공개
16	「부산 영도 태종대」 주변 주차장 확장공사	공개

## 【검토사항】

17	「장수 장수리 의암송」 주변 장수군청 증축계획 검토	공개
18	「정읍 내장동 단풍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공개
19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주변 공룡발자국 화석 보존방안 검토	공개

## 【보고사항】

20	2013년 천연기념물·명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보고	공개
21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공개

## 【심의사항】

천기 2013-11-01

### 1.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생태·문화 휴게공간 조성

####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내 생태·문화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내 생태·문화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사하구 사하구청길 30)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정일 : 1966.7.13

(3) 신청내용

○ 사업명 : 강변대로 수변 생태·문화 휴게공간 조성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25-1

○ 사업내용

- 조성면적 :  $A=2,338m^2$

- 규모 : 지상2층, 높이 9.1m, (건폐율 17.23%)

○ 사업기간 : 허가일~2015. 12.30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5) 철새보호대책

○ 주변여건

- 대상부지 동쪽으로는 시속 70km의 왕복 4차선 도로(현재 강변대로 확장공사 중임)와 접해있고 도로를 중심으로 신평·장림 무지개공단이 형성되어 있으며, 서쪽은 바다로 해안방파제를 중심으로 돌출되어 있는 물양장 부지임

○ 사업컨셉

-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인근에 위치하면서 해양 쓰레기 적치등 흉물로 방치된 물양장을 자연 친화적인 생태 문화 휴게 공간으로 재창출

-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철새도래지로서의 기능과 조화되도록 시행

- 건축물 높이
  - 지상 2층, 높이 9.1m이하로 계획
  - 본 건축물 공사 시에는 소음발생 최소화 대책 강구하여 시공
- 야간조명 최소화
  - 야간 조명 미설치로 철새에 영향을 미치는 인위적 간섭을 최소화
- 수질보호
  - 배출되는 오수 및 우수는 모두 강변대로변 맨홀에 연결하여 배수하며, 수변으로 방출되는 오염원은 없음
- 친환경 조경
  - 주변 식생 및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갈대 등을 식재하고, 목재데크와, 잔디블럭 등을 이용한 친환경적 포장과 옥상녹화로 주변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하였음
- 물양장 기능 축소
  - 기존 노후 물양장을 해역의 각종 비상상황 등을 대비하여 최소한의 물양장으로 계획하여 기능을 대폭 축소하였음
  - 기존 물양장에 준치 및 하역되는 해양쓰레기는 문화재 보호구역외 대체 적하 장소로 이전 조치

**라. 검토의견(\*\*\*\*\*)**

- 해당 사업은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지정구역 내 시민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가 지정구역이고, 수변에 인접해 있어 사업의 규모, 내용이 철새도래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마. 참고자료(현지조사/‘13.11.4)**

< \*\*\* 문화재위원 >

- 본 사업은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류의 강변도로변에 해양쓰레기 적치 등으로 흉물로 방치된 물양장 부지를 수변 생태문화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임
- 본 사업지역과 서쪽으로 약 500m 이격된 맹금머리등(사구)에는 하단부에 대규모 새섬매자기 군락이 발달하여 이를 먹이로 하는 큰고니(멸종위기종)가 매년 겨울 2,500여 개체나 도래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저어새, 개리, 물수리, 솔개 등 다양한 희귀조류가 도래하고 있음
- 본 사업지역은 지정구역 내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맹금머리등에 서식하는 철새들의 직접적인 가시권 내에 있어 2층 규모 건물의 신축은 어떠한 형태로든 철새의 도래 서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 사업지역은 맹금머리등에 도래하는 다양한 철새의 관찰장소로 최적지역이지만, 사업지역에서 약 2km 하류에 본 사업내용과 유사한 노을정 휴게소(도요등 철새관찰지), 아미산전망대(하구역 전체조망) 등 철새관찰 시설 및 전시장이 운용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2.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육담폭포 우회 탐방로 개설

### 가. 제안사항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육담폭포 일원의 안전사고(낙석) 우려지에 대한 우회 탐방로를 개설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육담폭포 일원의 안전사고(낙석) 우려지에 대한 기존 탐방로를 철거하고 우회 탐방로를 개설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 제8차 천연기념물분과 위원회('13.8.28.) 시 “문화재 경관(육담폭포의 자연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불허된 안건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장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양양군, 인제군 일원
  - 지정일 : 1965.11.5.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안전사고(낙석) 우려지 우회 탐방로 개설
  -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41임
  - 사업내용 : 우회 탐방로 개설
    - 기존 철계단 및 데크 철거 181m, 출렁다리 설치 43.7m, 아치형 목교 설치 18m, 데크 및 계단 설치 95m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 내

### 라. 검토의견 (\*\*\*\*\*)

- 동 사업은 탐방객을 안전사고(낙석)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회 탐방로를 개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3.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내 가설 선착장 설치

####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내 가설 선착장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내 가설선착장 설치를 위해 신청한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사하구 사하구청길 30)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정일 : 1966.7.13

(3) 신청내용

○ 사업명 : 가설선착장 설치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63번지

○ 사업내용

- 목적

· 장림포구 항내 악취저감 및 원활한 어항기능 수행으로 어민 및 지역 주민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준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어선의 대체 임시 선착장 설치

- 사업규모

· 면적 : L=100m, B=4m / 가설폰툰설치 : 1,600장(50cm×50cm, 플라스틱 재질)

○ 사업기간 : 허가일~2014. 5.30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 라. 검토의견(\*\*\*\*\*)

○ 해당 사업은 장림포구 어항기능 수행을 위한 준설공사와 관련하여 어선의 임시 대체 선착장 조성을 위한 것으로 규모가 작고 어선의 정박을 위한 것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4. 「남생이」 유전적 특성과 증식기술 연구를 위한 포획 및 사육

### 가. 제안사항

한국산 남생이 서식지 조사를 통한 유전적 특성을 연구하고 한국산 남생이 복원을 위한 남생이를 포획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최근 남획, 수질오염, 서식지 파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남생이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을뿐 아니라 중국산 남생이가 유입되어 외관상 한국산 남생이와 구분이 어려워 한국산 남생이 유전적 특성 연구 및 복원을 위해 남생이 포획 및 사육허가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53호 남생이
  - 소재지 : 전국일원
  - 지정일 : 2005. 3. 17
- (3) 신청내용
  - 사업명 : 한국산 남생이 유전적 특성 및 증식기술 연구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강진군
  - 사업내용
    - 남생이 포획 및 DNA 분석 : 2013년 ~ 2015년
      - 개체수 및 장소 : 16개체(영암군), 4개체(강진군)
    - 남생이 사육 : 2013년 ~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지속)
      - 개체수 및 장소 : 12개체(영암군), 2개체(강진군)
    - 남생이 재방사 : 2013년 ~ 2015년
      - 개체수 및 장소 : 4개체(영암군), 2개체(강진군)
    - 세부내역

구분	2013		2014		2015		합 계		
	영암	강진	영암	강진	영암	강진	소계	영암	강진
DNA분석	4		8	2	4	2	20	16	4
사육	4		6	1	2	1	14	12	2
재방사			2	1	2	1	6	4	2

○ 포획방법

- 수심 밖에서 숨을 쉬는 남생이의 특성이 반영된 생포트랩을 제작하여 서식지로 확인된 지역에 포획틀 설치
- 포획틀 설치후 주기적으로 포획 유무 확인
- 포획된 개체의 외형적 특성(무게, 길이 등) 조사

○ 포획후

- 포획된 개체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시(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의 유전자분석기 활용)
  -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 한반도집단과 중국집단 분류
  - 한반도집단 남생이에 대한 유전자 정보 확보
- 한국산남생이 연구를 위한 사육(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남생이 연구시설 활용)
- 중국산남생이 재방사 : 유전자 분석결과 확인 후, 포획된 장소에 재방사 실시

라. 검토의견 (\*\*\*\*\*)

( \*\*\*박사 국립수목원)

-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453호 남생이의 유전적 특성 및 증식기술 연구 신청 건과 관련하여 학술연구계획서를 검토한바,
- 한국산 남생이에 대한 생태 및 유전자 연구에 의한 결과는 차후 한국산 남생이의 유전자원 보존 및 집단의 보전을 위하여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현재 남생이의 번식에 대한 인공적 기술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바, 모든 연구는 월출산국립공원 일원에 자연 서식하는 남생이의 자연적 번식 및 개체군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이에 따라 유전자 분석을 위한 포획 및 방사는 필요하나, 남생이 포획전 월출산일원의 남생이 서식 개체수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산 남생이의 개체수를 고려하여 한국산 남생이의 사육은 최소로 하고 인공번식 기술 개발 등에는 중국산 등 대체 생물을 통한 사육기술 개발 후 한국산 남생이에 적용하는 것이 한국산 남생이의 보존 및 증식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 전 문화재 전문위원 )

- 천연기념물(453호) 남생이에 대한 개체수 및 서식지 조사, 유전적분석, 환경적 □생태적 특성 연구를 통한 안정적인 증식 기술 및 자연상태의 개체수 증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사료됨.
  - 1) 영암에서 16개체, 강진에서 4개체. 총 20개체를 포획하고자 하는데 암수비율이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지 않았으며 포획하고자하는 영암과 강진지역에 서식 개체 분포조사가 나와 있지 않아 포획개체 선정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며
  - 2) 포획 후 재 방사 된 개체에 행동권 분석을 위한 발신기 부착은 영암지역에 방사하는 4개체에만 부착하고 강진지역에 방사하는 개체에는 발신기 부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 3) 포획한 개체가 유전자 분석결과 중국산 남생이 일 경우 포획된 장소에 재 방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한국산 남생이 보존 연구에 다소 어긋난다고 생각되며
  - 4) 한국산 남생이 인공증식 기술 개발 및 개체수 증식(복원)을 하여 자연 방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인공증식을 위한 기본 설계 및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궁금함을 자아냄.
- 결론적으로 2013년 영암에서 포획하고자 하는 4개체(암:2, 수:2)를 기본적으로 사육하면서 서식지개체수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자연번식에 피해를 주지않는 상태에서 영암 또는 강진에서 몇 개체를 포획할 것인가 개체수를 선정하여 연구하였으면 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5.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

### 가. 제안사항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 관련 추진경과
  - '11.7.24.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고시(국토해양부/금번 신청안)
  - '12.7.25. : 문화재청 검토의견 수렴 <문화재위원회 검토>
    - \* 금번 신청(기존 방파제에 150m 연장)안이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미미할 것이라는 검토의견 회신
  - '13.4.12. : 홍도항 방파제 보강공사 현상변경 허가
    - \* 방파호안 100m, 방파제 100m 설치 (현재 실시설계 중)
- ※ 신청안에 대해 홍도주민들의 반대의견 제기(홍도 자연경관 훼손 및 주민피해 등)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전라남도지사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0호 홍도 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1번지 등
  - 지정일 : 1965.4.7.
- (3) 신청내용
  - 사업명 :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전면해상
  - 사업내용 : 동방파제 축조 150m, 기존 홍도항 내 주요시설물 보호, 기존 방파제 연계 전기인입시설, 항행시설·친수시설·등대 1기, 항로표지시설 등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 내

### 라. 검토의견 (\*\*\*\*\*)

- 동건은 최근 태풍으로 홍도항 주요시설 및 마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여객선 및 어선의 항행안전 도모를 위해 동방파제를 축조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해양생태 및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참고자료 (\*\*\*\* \*\*)**

<\*\*\* 문화재위원>

- 허가신청한 동방과제 축조는 기존 방과제에 연결하여 동측으로 150m를 연장하며, 전기인입시설, 등대 1기, 선박안전 항행시설, 친수시설, 항로표지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임
  - \* 홍도항 동방과제 축조는 기존방과제에 연결하여 150m를 연장하는 계획(안)이 문화재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한 것으로 의견 제시('12.7.25)하였으며, 홍도항 방과제 보강(방과호안100m,방과제100m)을 허가('13.4.12)하였음
- 홍도항 항내 정온수역 확보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실시한 수리모형실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동방과제의 축조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해수면에 노출되는 구조물의 규모는 기존 방과제와 같게 하고, 형상과 색상은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며,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등대 및 선박안전, 재해 방지와 관련되는 시설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동방과제 축조로 인한 해양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오탁방지막 설치 등 방제시설 및 방제체계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가의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문화재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사전 현장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보류**

## 6.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북측 선착장 보수·보강

### 가. 제안사항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북측선착장 보수·보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북측선착장 보수·보강공사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전라남도지사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0호 홍도 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1번지 등

○ 지정일 : 1965.4.7.

(3) 신청내용

○ 사업명 : 홍도항 북측선착장 보수·보강사업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홍도항 북측선착장

○ 사업내용 : 홍도항 북측선착장 보수·보강사업

- 파손구간 안전진단 시행

- 콘크리트 블록식 선착장 제거(44\*20\*10m) 및 재설치(29\*20\*10m)

- 기존 옹벽식 구조물 제거 후 해수소통구 설치(STEEL교량 형식 40\*6m)

- 상부시설 파손부 보수·보강(몰탈, 에폭시 충전 등) 및 안전난간 설치 등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 내

### 라. 검토의견 (\*\*\*\*\*)

○ 동 건물은 태풍 내습 등으로 피해를 입은 홍도항 북측 선착장에 대해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선착장을 보수·보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해양생태 및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참고자료 (\*\*\*\* \*\*)

<\*\*\* 문화재위원>

- 본 사업은 홍도 흑산초등학교 북측에 있는 홍도항 북측선착장에 대하여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형실험 수행 결과에 따라 기존 선착장을 축소하며, 시설물을 보수·보강하고 해수소통구를 설치하는 사업임
- 세부사업은 길이 44m의 기존 콘크리트블록식 선착장(폭 20m, 높이 10m)을 제거하고, 길이 29m의 선착장을 재설치하며, 해수소통구(길이 40m, 폭 4m, Steel교량형식)를 설치하고, 상부시설 파손부분 보수와 안전난간 설치, 가건물을 이전하는 사업임
- 선착장 보수·보강은 필요한 사업이며 재설치한 선착장이 천연보호구역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석투하, 콘크리트 타설, 사업장비의 운행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오탁방지막 설치 등 방제시설 및 방제체계, 해양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영향조사 등은 관련 전문가의 별도 검토를 받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7.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내 잠수정 운항기간 연장

### 가. 제안사항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내 잠수정 운항기간 연장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내 잠수정 운항기간 연장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국해저관광(주)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산4번지
  - 지정일 : 2000.7.18.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잠수정 운항기간 연장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산4번지 주변해역
  - 사업내용 : 운항기간 연장
    - (당초) : 2012.01.01.~2013.12.31.(2년)
    - (연장) : 2014.01.01.~2015.12.31.(2년)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 인근해역

### 라. 검토의견 (\*\*\*\*\*)

- 동 건은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내 잠수정 운항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주변해역 내 연산호 등 해양생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8.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내 풍력발전단지 조성

### 가. 제안사항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내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내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 2013년 제6차 및 제7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불허된 사항으로, 설치 위치 및 수량 등을 조정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 ※ 그간 풍력발전단지 조성 신청 및 심의결과

구분	한국중부발전(주) (‘06.9월, ’07.1월, ’12.11월 신청)		(주)한국풍력에너지 (‘09.3, 4월, ’10.1월, ’12.11월 신청)	
신청 내용	1차 (‘06.9)	20MW(2.0MW×10기), 높이80m	1차 (‘09.3)	100MW(2MW × 50기), 높이80m *천연보호구역내 40기
	2차 (‘07.1)	20MW(2.0MW×10기), 높이60m	2차 (‘09.4)	40MW(2MW × 20기), 높이80m *천연보호구역내 15기
	3차 (‘12.11)	16MW(2MW×8기), 높이 80m	3차 (‘10.1)	20MW(2MW × 10기), 높이70m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10.25 문화재위원회 심의(불허)</li> <li>- 문화재구역내 생태 및 경관의 추가적 훼손이 우려됨</li> <li>○ ‘07. 1.24 문화재위원회 재심의(불허)</li> <li>- 생태적·경관적 훼손 우려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 3.25 문재위원회 심의(보류)</li> <li>○ ‘09. 4.15 문화재위원회 심의(불허)</li> <li>- 천연보호구역 내에서의 풍력발전시설 설치는 생태적, 경관적 훼손이 크게 우려되는 등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보존·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li> <li>- 다만, 천연보호구역 밖에서의 풍력발전 시설 설치에 대한 타당성은 재검토 할 수 있는 사항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11.28 문화재위원회 심의(보류)</li> <li>- 신청기관이 2개이므로 양사간 협의 필요</li> <li>- 협의가 될 경우 현지조사등을 통해 타당성 조사 후 재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 1.27 문화재위원회 심의(불허)</li> <li>○ ‘12.11.28 문화재위원회 심의(보류)</li> <li>- 신청기관이 2개이므로 양사간 협의 필요</li> <li>- 협의가 될 경우 현지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 조사 후 재검토</li> <li>* ‘12.11.30 허가신청 철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 3.21 문화재위원 현지조사</li> <li>○ ‘13. 3.27 문화재위원회 심의(불허)</li> </ul>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양구풍력발전주식회사(대표이사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246호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강원도 양구군 동면 일부, 인제군 서화면 및 북면 일부
  - 지정일 : 1973.7.10.
- (3) 신청내용
  - 사업명 : 풍력발전단지 조성
  - 사업위치 : 강원도 양구군 동면 비아리 산1, 산1-2, 해안면 만대리 산64 (양구군 돌산령 453지방도로 주변)
  - 사업내용 : 풍력발전기 3기 설치, 사무실·전기실·창고 건립
    - 풍력발전기 규격 : 9.9MW(3.3MW×3기), 높이 91.5m
    - 소요면적 : 2,400㎡(발전기 1,200㎡, 사무실·전기실·창고 1,200㎡)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 내

## 라. 검토의견 (\*\*\*\*\*)

- 동건은 금년 제6차 및 제7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부결된 사항에 대해 설치위치 및 수량을 조정하여 재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마. 참고자료 (현장검토 의견 / '13.11.22)

<\*\*\* 문화재위원, \*\*\*\*\* 前 문화재위원>

- 이 지역은 2006년 9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중부발전(주)와 (주)한국풍력 에너지를 통하여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한 바 있는 곳이며, 문화재구역 내 생태 및 경관에 대한 훼손 우려로 인하여 불허된 바 있음.
- 이 대암산·대우산 지역은 비무장 지대 인접지역 중에서도 생물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서 원상 보존이 절대 필요한 지역이며, 더구나 이번 3기의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지역은 양구-해안을 잇는 돌산령 부근으로서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의 중심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산림생태계의 완충적 보호기능을 하는 소매군락에 해당하는 지역이므로, 인위적 시설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곳임.
- 현재 군사목적 상 불가피하게 개설되어 있는 도로 자체도 이미 생태계를 교란 내지 훼손하고 있는 상태에서 풍력발전기와 같은 대형 인공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생태계의 교란과 훼손을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됨.
-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으며 그동안 보전이 잘되어, 장차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지니고 있으므로, 향후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함.
- 본 건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청원한 현상변경 허가건과 기본적으로 다를 바 없는 것이며,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의 보존·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됨.

## 바. 의결사항 : 부결



## 9. 「고양 송포 백송」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고양 송포 백송」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고양 송포 백송」 주변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농업회사법인 웰그린주식회사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60호 고양 송포 백송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산207번지
  - 지정일 : 1962.12.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다세대주택 신축
  - 사업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983-1번지
  - 사업내용 : 다세대주택(11동) 신축
    - (2구역) 다세대주택 2동(지하1층, 지상4층, 높이 13.4m) \*건물 일부
    - (3구역) 다세대주택 9동(지하1층, 지상4층, 높이 14.5m)
  - \* (2구역) 2층이하, 최고높이 12m이하(경사지붕), (3구역) 고양시 조례 등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80m이상

### 라. 검토의견 (\*\*\*\*\*)

- 동 사업은 고양 송포 백송 주변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당 지역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2구역과 3구역에 걸쳐있어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참고자료 (\*\*\*\* \*\*)

<\*\*\* 문화재위원>

- 천연기념물 제60호 '고양 송포 백송'의 주변 1구역에도 다수의 기존 건축물들이 존재함.
- 다세대 주택 신축 대상지는 대부분 3구역 내에 있으며, 2구역에는 그 중 일부 건물이 들어설 예정임.
- 다세대 주택 신축 대상지는 송포 백송이 자리잡은 위치보다 고도가 낮은 곳이며, 이격거리도 상당하여서 백송의 생육 환경에 끼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현상변경을 허가함에도 천연기념물 보호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10. 「포항 뇌성산 뇌록산지」 천연기념물 지정

### 가. 제안사항

「포항 뇌성산 뇌록산지」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포항 학계리 뇌록산지」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 추진경과
  - '11. 6월 포항 뇌성산 뇌록산지 소개 언론보도
  - '12. 6월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사전조사
  - '12.12월~'13.1월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지정조사
  - '13. 8월 천연기념물 지정 관련 의견 제출(포항시→청)
  - '13. 9월 천연기념물 지정 관련 자료 제출(포항시→청)
  - '13.10.11~11.11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2) 주요내용

- 문화재 명칭 : 「포항 뇌성산 뇌록산지」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학계리 산7-2(2,841㎡)
-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 지정가치
  - 뇌록은 지질작용에 의해 생성된 일종의 광물자원으로서 녹색을 띠고 있고 쉽게 분말로 제작할 수 있어서 조선시대 건축물의 단청 등에 사용되어 온 전통 천연안료임
  - 포항 장기면 뇌성산은 남한 내 유일한 뇌록 산출지로서 한반도 지각진화 이해에 유용한 단서를 제공하는 지질학적 가치와 조선시대 궁궐이나 사묘, 성곽의 문루 등 국가 주요시설 단청에 사용되는 전통안료의 공급지로서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큼

- 문화재관리단체 : 포항시(포항시장)
- 문화재구역 : 1필지 / 2,841m<sup>2</sup>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관리자)	용도지역
				지적	지정면적		
1	포항시 남구 장기면 학계리	산7-2	임	56,231	2,841	포항시	준보전산지 자연환경보전지역

## 라. 문화재 현황

- 뇌록산지는 경상북도 포항시 장기면 학계리 뇌성산 기슭에 위치한다. 뇌록산지는 작은 언덕을 사이에 두고 크게 두 곳으로 나뉘어져 U자형을 이루고 있다. 한 곳에는 작은 동굴이 있고, 다른 한 곳에는 샘이 있는데 이곳에서 뇌록을 채취하였다고 전해진다.
- 이 뇌록은 채굴면 흔적으로 보아 과거에 수차례에 걸쳐 채굴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채굴흔적은 가로 약 40m, 세로 약 20m 깊이 약 15m 정도로 관찰되며, 채굴 및 선광 작업 후에 폐기한 폐석더미로 보아 오랫동안 많은 채광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 뇌록은 신제3기 현무암질 암석 내에 맥상 또는 간극 충전상으로 산출되며, 뇌록의 균열 충전 정도는 광화대 중심부에서는 높지만 가장자리로 갈수록 낮아진다.
- 뇌록은 지질작용에 의하여 생성된 일종의 광물자원으로서 녹색을 띠고 있고 쉽게 분말로 제작할 수 있어서 전통 무기안료로 사용되어 온 광물안료이며, 주로 셀라도나이트(celadonite)라는 점토광물로 구성되어 있다.
- 균열의 발달로 만들어진 암괴들의 장경은 20~50cm이고 등변 사각형에서 장방형에 이르는 여러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 있다. 현무암 균열을 충전하고 있는 뇌록은 그 두께가 대체로 1~3cm 이하이며 수mm 이하의 경우도 흔하게 관찰할 수 있다.

## 마. 검토의견 (\*\*\*\*\*)

- 전통안료의 재료인 뇌록을 채취한 역사문화적 가치와 국내 유일의 뇌록 산출지로서의 희귀성 및 이러한 광물의 산상과 생성기원을 해석하는 것이 한 반도 지각진화 이해에 유용한 단서를 제공하는 지질학적 가치를 가지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상기와 같은 상징성에 의해 지정함에 따라 관리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대로 뇌록 산출지역과 그 인근 공유지에 대해서만 지정구역 및 원형보존지역으로 보존하고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문화재 지정명칭 검토 필요

- \*\*\* 문화재위원 : 포항 뇌성산 뇌록
- \*\*\* 문화재위원 : 장기 뇌성산 뇌록산지
- \*\*\* 전문문화재위원 : 포항 뇌록(Celadonite) 산지
-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문연구원 : 포항 뇌록(Celadonite) 산출지
- \*\*\* 경기대학교 교수 : 장기면 뇌록

바. 참고자료(\*\*\*\* 등 \*\*)

(1) 자치단체 의견

- 장기 뇌성산은 국내 유일의 뇌록 산지로서 그 보존가치가 높습니다.
- 하지만,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지정(보호)구역 주변지역의 각종 개발행위 및 토지이용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사유재산권의 행사에 많은 문제가 되므로 지정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현재 뇌록산지는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산지로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며, 또한 주변 산지는 마을 주민들이 조상들의 묘소를 조성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묘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묘를 쓸 수 없을 경우 많은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 향후 뇌록산지를 문화재로 지정할 경우라면 뇌록산지만을 지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 지역주민 의견

- 장기 뇌성산은 국내 유일의 뇌록 산지로서 보존가치가 높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주변지역(500m)의 토지이용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사유재산을 침해하게 되므로 지정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뇌록산지는 접근이 어려운 산지라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며, 또한 주변은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조상들의 묘를 모시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묘소를 쓸 수 없을 경우 많은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 만일, 뇌록산지를 문화재로 지정코자 할 경우는 뇌록산지만을 지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 현지조사 의견('12. 12. 18/'13. 1. 14)

<\*\*\* 문화재위원>

- 문화재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 문화재 명칭(안) : 포항 뇌성산 뇌록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성동리와 남구 장기면 학곡리와의 경계
- 좌표 : 북위 35°55'59.4", 동경 129°30'36.0" 일대

○ 연혁·유래 및 특징

- 뇌록은 녹토(綠土; green earth)라고도 부르며, 광물명은 운모류에 속하는 셀라도나이트(celadonite; 灰綠石)임.

○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뇌록이란 자연적으로 녹색을 띠는 여러 가지 광물질 물질로 지질학적으로는 녹토[綠土; green earth, terre verte(佛), terra verde(伊)]라고 부르며, 단청을 입힐 때 밑바탕 격인 가칠(假漆)을 할 때나 사찰 벽화의 바탕색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 東國輿地勝覽(1486)에는 ‘磊綠’, 仁政殿營建都監儀軌(1805)에는 ‘磊碌’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 뇌록은 점토광물로서 운모류에 속한다. 뇌록에 속하는 대표적인 광물은 해록석(海綠石; glauconite)과 셀라도나이트(celadonite; 灰綠石)이며 뇌성산에서 산출되는 뇌록은 셀라도나이트로 밝혀지고 있다(김민, 2007; 도진영 외, 2008). 셀라도나이트의 성분은  $K(Mg, Fe^{2+})(Fe^{3+}, Al)Si_4O_{10}(OH)_2$ 이며, 주로 현무암질 암석 내의 공동(cavities)에서 산출된다. 뇌록은 백색광 중의 녹색 파장이 통과되어  $Fe^{2+}$ 의 특징적인 녹색을 띠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의 뇌록 산출은 포항 뇌성산, 황해도 풍천, 평안도 가산 등이 알려져 있으나 남한에서는 포항의 뇌성산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뇌성산 뇌록은 신생대 제4기 현무암 지대에서 현무암 내에 발달한 절리를 따라 충전되어 1cm 내외의 두께로 산출되며, 채굴했었던 흔적인 소규모 갱도와 폐석더미가 남아 있다.
- 뇌성산 뇌록은 색상이나 향균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역사기록에 따르면 불국사 대웅전, 통도사 영산정 다보탑 벽화, 기림사 대적광전, 보경사 대적광전 등 조선시대 주요 건축물의 단청과 사찰의 내외벽 벽화에 사용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있다.
  - 동국여지승람 23권, 장기현 편 토산조(土産條)에 ‘磊綠出磊城山’이라고 적혀 있다.
  - 창덕궁 인정전을 다시 짓는 공식기록인 ‘仁政殿營建都監儀軌’에 ‘경상도 관찰사는 장기에서 나는 뇌록 20斗를 채굴하여 조달하라’는 조달명령서가 있다(1805년 순조 5년 갑자 2월).

- 경희궁의 내전을 다시 짓는 공사기록인 ‘西闕營建都監儀軌’의 경상감영에 뇌록 500斗를 장기현에서 조달할 것을 명한 기록이 있다(1830년 순조 30년 경인 3월).
- 창경궁 내전을 다시 짓는 공사기록인 ‘昌慶宮營建都監儀軌’의 경상감영에서 뇌록 700斗를 보낼 것을 명령하는 기록이 있다(1834년 순조 34년 신묘 7월).
- 따라서 단청이나 벽화의 전통 천연안료로서 광물을 이용했다는 광물의 활용성, 역사성, 문화예술성, 뇌성산에서만 산출되는 희소성 등 뇌록은 뛰어난 가치와 특성을 지니고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지정 대상 및 범위
  - 지정구역은 뇌록의 분포지를 조사하고 지적도를 참고하여 추후 결정.
-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지정대상이 주변 경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지정구역에서 50m를 현상변경 허가기준 1구역으로 하고 나머지 구간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에 따르도록 해도 무방할 것임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천연안료로서의 광물의 활용성, 문화예술성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
- 종합의견
  - 단청이나 벽화의 전통 천연안료로서 광물을 이용했다는 광물의 활용성, 역사성, 문화예술성, 뇌성산에서만 산출되는 희소성 등 뇌록은 뛰어난 가치와 특성을 지니고 있어 천연기념물로의 지정가치가 큼

### <\*\*\* 문화재위원>

- 문화재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 문화재 명칭(안) : 장기 뇌성산 뇌록산지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상기 지역은 장기면 모포리 서측에 위치한 뇌성산(표고 212.8m)을 중심으로 표고 150 내지 200 m 내외의 산지가 발달된 지역으로, 대부분 식생 및 토양에 의해 피복된 지역이다.
  - 이 지역 일대에는 대부분 화산쇄설성퇴적층으로 이루어진 신생대 전기 마이오세의 범곡리층군 지층들이 분포하며, 뇌록이 산출되는 지역에는 열극분출 기원의 현무암 노두가 국부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 이 지역은 동국여지승람(1486)에서 뇌록(磊綠)(인정전영건도감의궤(1805)에서는磊礫이라 표기)으로 표기된 천연안료인 녹토(green earth)가 채취된

지역으로(김민, 2008), 현장에는 과거 이 지역에서 녹토가 채취되었음을 말해 주는 채굴흔적(구덩이 및 굴)이 버럭(폐석더미)과 함께 직경 50m 내외의 범위에 크게 2개 지역으로 남아 있다.

#### ○ 연혁 유래 및 특징

##### <연혁 및 유래>

- 국내에서는 뇌록을 사찰벽화나 단청의 바탕칠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불국사 대웅전, 기림사 대적광전, 보경사 대적광전 등 조선시대 건축물의 단청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되었다(안병찬 외, 2007).
- 1805년(순조5년) 인정전영건도감의궤(창덕궁 인정전을 짓는 공사기록)과 1830년(순조 30년) 서궐영건도감의궤(경희궁의 내전을 짓는 공사 기록)에 “장기현으로부터 뇌록을 조달할 것을 명하는 경상감영에 보내는 공문”의 내용이 들어 있어 조선시대에 실제로 이 지역이 뇌록의 공급지였음을 말해 준다.
- 뇌록은 이 지역을 비롯하여 황해도 풍천군과 평안도 가산군 등지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이상진 외, 2007), 현재로서 남한에서는 뇌록의 산출지가 이 지역이 유일하게 알려진 곳이다.
- 이 지역 주민들은 뇌록을 ‘매새’라고도 불렀으며, 뇌록을 채굴하는 곳을 ‘매사구디이(구덩이)’ 또는 ‘원구디이’ 라고도 하는데, 이곳에서 뇌록을 채굴하던 과정에 인부들이 50명이 매몰되어 원구디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 <특징>

- 뇌록이 직접적으로 채취된 지역에는 여러 방향의 주상절리가 발달한 현무암이 노출되어 있으며, 뇌록은 이 현무암 내의 균열과 간극을 따라 충전된 맥상의 상태로 나타나고, 맥의 두께는 수 mm 내지 수 cm 내외를 보인다.
- 뇌록을 구성하는 주 광물은 철분이 풍부한 운모류 광물의 일종인 셀라도나이트(celadonite)로, 소량의 녹니석/스멕타이트 혼합층광물과 모네나이트 및 단백석이 함유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도진영 외, 2008), 뇌록의 녹색은 함유된  $Fe^{2+}$ 의 성분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도진영 외, 2008).

#### ○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지정가치>

- 지질광물학적으로 뇌록을 구성하는 광물의 산출은 국내에서는 희귀성을 가지며, 이와 함께 이 광물의 산상과 생성기원을 해석하는 것 또한 한반도 지각진화 이해에 유용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기록이다.

- 관련 연구문헌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우리나라 전통안료이자 천연안료인 뇌록의 남한 내 유일한 산출지임은 물론, 향후 국내 문화재 보수를 위한 천연안료의 사용과 연구개발에 귀중한 학술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지질과학적 및 역사문화적 가치를 복합적으로 보유한 뇌록 산출지는 천연기념물로서의 지정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근거기준>

- 전술한 이 뇌록산지의 지정가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천연기념물 지정기준에 명시된 ‘한반도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구조·퇴적구조와 암석’ 중 3) 그 밖에 특이한 구조의 암석에 해당하는 가치 기준을 충족한다.

#### ○ 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 뇌록의 산출이 확인된 현무암
- 보호구역 : 뇌록의 산출이 확인된 현무암 분포지

####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이 뇌록산지의 발달특성은 특이성과 희귀성에서 뛰어난 분명한, 뇌록 산출의 성인이 아직 구체적으로 규명되어 있지 않음으로, 이 뇌록의 자연사적 가치 확보를 위해서는 향후 이에 대한 학술조사 및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뇌록의 채굴 흔적과 뇌록의 산출이 확인된 핵심 지역에 대해서는 출입을 제한하는 펜스를 설치하고, 뇌록산지의 지질광물학적 발달특성과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적절한 내용의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 천연기념물의 다양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뇌록과 같은 특이성과 희귀성을 가지는 광물이나 광산에 대해서도 국가기념물 지정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 종합의견

- 이 뇌록산지의 학술적 가치와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함께 고려할 때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이 뇌록산지의 자연사 및 역사적 가치를 보전함과 함께 후속 학술 연구자료로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 전 문화재위원>

- 문화재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 문화재 명칭(안) : 포항 뇌록(Celadonite) 산지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제3기 현무암 분포지에 발달하는 전통 안료로 사용되었던 천연광물 분포 및 채굴흔적
- 연혁·유래 및 특징
  - 궁궐이나 사찰의 단청, 벽화 등에 사용되었던 천연 안료의 재료로 담록색을 띠는 천연광물로 채굴 흔적이 잔류됨
-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열수작용에 의해 생성된 셀라도나이트 광물은 한반도 남부에서는 이곳에서 유일하게 보고되고 있고, 우리 문화재의 전통안료로 사용된 점이 학술적, 역사문화적 가치를 가짐
- 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 뇌록이 산출되는 현무암 분포지 일대
  - 보호물 : 채굴흔적과 갯도
  - 보호구역 : 채굴 갯도를 중심으로 북쪽과 서쪽으로 100m, 남쪽과 동쪽으로 50m 이내 지역
-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지표를 굴착하는 모든 행위(묘소의 관리 행위 제외)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넝쿨 식생의 번식은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전통 안료의 원료광물이므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 복원 등과 같은 공공 수요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 전통문화와 관련된 담청색 천연 안료 원료광물로 국내에서는 산출이 희귀하여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크므로 국가기정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산출량이 극소량이므로 쉽게 훼손되거나 망실될 가능성이 높아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적 가치도 있다고 생각된다.

###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문연구원>

- 문화재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 문화재 명칭(안) : 포항 뇌록(Celadonite) 산출지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신생대 제3기 현무암내에 생성된 천연광물 뇌록을 산출하는 현무암분포지로서 우리나라 전통안료로 사용되어 왔음
- 연혁·유래 및 특징
  - 궁궐, 사찰 등의 단청 및 벽화 등에 이용되던 청녹색의 천연안료로 이용되어 왔으며, 굴진 등 인공적 개발흔적이 확인됨
-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화산암의 종류인 현무암 등에서의 열수작용으로 생성되는 뇌록은 남한에서는 유일한 산지로서 우리 문화재의 전통안료로 사용되어 왔으며, 세계적으로는 로마시대 등에서도 보고 되고 있으므로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것임
- 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 뇌록산출 현무암 분포지 주변
  - 보호물 : 현무암 노두, 갯도 및 주변부
  - 보호구역 : 현무암 노두, 개발 갯도를 중심으로 50-100여미터 이내 지역
-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보호구역 내 현무암 노두 훼손 및 지하채굴 등의 행위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현무암 노두 및 갯도를 포함하는 중심부에는 큰 수목에 대한 선택적 관리가 필요하며 넝쿨, 잡목 및 잡초 등은 선택적 제거가 필요
- 종합의견
  - 우리의 전통적 건축물과 관련된 청록색 천연안료로 이용되어 왔던 뇌록의 유일한 남한 내 산지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으며, 그 산출이 제한적이어서 훼손 및 망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존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또한 뇌록을 포함하는 현무암 노두의 발달상태도 지질학적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이며, 자체 경관만으로도 보존될 만한 가치를 충분히 가진다고 판단됨

### <\*\*\* 경기대학교 교수>

- 문화재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 문화재 명칭(안) : 장기면 뇌록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장기면 뇌성산의 중간부에 조선시대 뇌록 출토지가 잔존
- 연혁·유래 및 특징
  - 장기면 뇌성산은 조선후기 유일한 뇌록 생산지로 19세기말까지 국내에서 소비되는 뇌록이 공급되던 곳임
-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뇌록은 조선시대 초기부터 19세기말까지 사용해 온 단청의 바탕색 안료로 중국, 일본에서는 사용예가 알려져 있지 않은 우리나라 고유의 단청 안료의 하나임.
  - 뇌록산지는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장기현 뇌성산 외에 황해도 풍천현이 언급되어 있으나 17세기 이후의 조선왕조실록이나 각종 영건 관련 의궤에서는 오직 장기현의 뇌록만이 언급되어 있음. 특히 장기현의 뇌록은 궁궐이나 사묘, 성곽의 문루 등 국가의 주요 시설에서 단청을 칠하기 위해 반드시 채취하여 사용해 온 조선후기 유일한 안료임.
  - 현재 장기면 소재 뇌성산의 동쪽 기슭 일대에는 조선시대에 뇌록을 채취하던 곳이 커다란 구덩이 형태로 두 곳이 확인되고 있으며 채취당시 깊은 굴의 형태였다가 지금은 주변 석재들이 무너져 내려 묻혀 있는 상태임. 다만, 지금도 굴 인근의 석재 사이에 뇌록의 조각들이 남아 있어서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며 간단한 도구로 소량의 채취가 가능한 상태임.
  - 뇌성산은 정상에 뇌성산성이 있으며 산 일대는 대부분 사유지로 알려져 있으나 하부는 일부 사유지가 있음. 특히 뇌록 산지로 진입하는 길에는 민간 묘소가 수 기 조성되어 진입로 등이 나 있고 민간인의 출입이 있음.
  - 뇌록 출토지는 그동안 지역 내 일부 향토사학자 정도에만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학계에서 뇌록산지를 소개한 이후 국내외에서 현지를 방문하거나 때로는 일부 안료를 무단 채취, 반출하는 사례도 있음.
  - 따라서 국내 유일한 뇌록 산지를 보호하고 일반인의 무단 채취나 반출을 금지하기 위해서 문화재 지정이 시급한 실정임. 현재 화학안료에 의존하고 있는 단청 작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뇌록을 비롯한 천연안료의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도 뇌록 산지에 대한 보호조치가 반드시 필요함.

- 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 조선시대 뇌록 채굴 지점(2, 3곳) 일대
  - 보호구역 : 문화재구역 주변의 사유지를 제외한 지역
-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지정 후 일반인의 무단 출입을 제한하고 특히 무단 채굴 및 반출행위를 엄격히 금지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문화재구역에 대해서 일정한 출입제한 시설을 하고 보호구역에 대한 형질 변경행위를 제한하며, 뇌록에 대해서는 향후 활용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함
- 종합의견
  - 조선후기 유일한 뇌록산지라는 희소가치와 유적지의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지정되어야 할 것임

아. 의결사항 : 원안가결

## 11. 「포항 뇌성산 뇌록산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 가. 제안사항

「포항 뇌성산 뇌록산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포항 뇌성산 뇌록산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대상문화재 : 포항 뇌성산 뇌록산지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학계리 산7-2
  - 지정일 : 2013. 12월(지정고시 예정)
- (3) 신청내용
  - 허용기준(안)

구분	허용기준
1구역	○ 원지형 보존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축·개축·보수 허용
2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12.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주변 새연교 야간조명 설치

###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주변 새연교 야간조명 설치를 위해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주변 새연교에 야간조명 설치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귀포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95호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791 외
    - 지정일 : 1968. 5. 23
  -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2565
    - 지정일 : 1962. 12. 7
  - 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산4번지 등
    - 지정일 : 2000. 7. 18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야간 경관조명 시설공사(새연교)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707-4 새연교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주변과 연계된 야간 경관을 연출하여 이용객에게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
    - 대상지 : 새섬(서귀포시 서귀동 산3-1번지 일원)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으로부터 약 300m(허용기준 상 제1구역-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가능)

**라. 검토의견(\*\*\*\*\*)**

- 조명 설치 자체가 패류화석산지 보존이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야간에 조명을 비추는 방향인 새섬(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주변 허용기준 상 제1구역)의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13.11.5)**

<\*\*\* 문화재위원>

- 새연교 야간경관조명 시설공사 지역은 천연기념물 제195호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연관된 지역임.
- 야간경관조명이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동·식물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여부는 관련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함.

**바. 참고자료(\*\*\*\*<\*\*\*\*> \*\*)**

- 새연교는 천기 195호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에서 약 300여m 떨어진 새섬과 서귀포항 내 유람선 선착장을 연결하는 인도교량으로서 수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하는 장소임에 따라 야간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임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13.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주변 경작지 진입로 설치

#### 가. 제안사항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주변 경작지 진입로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주변(장사도) 경작지 진입로 설치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34호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 소재지 :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산115-2
  - 지정일 : 2003.02.04
- (3) 신청내용
  - 사업명 : 경작지 진입로 설치공사(선착장 및 징검다리)
  - 사업위치 :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장사도 인근 공유수면
  - 사업내용 : 중도-장사도 간 공유수면 및 장사도 옆 공유수면에 시설물 설치
    - 해양생물탐방로(폭 3m) 및 징검다리(폭 1.5m) 설치(총길이 176m)
    - 선착장 및 부잔교 설치

#### 라. 검토의견 (\*\*\*\*\*)

- 동 사업내용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수계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로서 문화재 주변의 수질과 수량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마. 참고자료

<\*\*\*\*(\*\*) \*\*>

- 해당문화재에 인접하여 콘크리트 사각 징검다리 설치 및 콘크리트 선착장, pe 부잔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중도와 중도를 연결하는 양면해수욕장의 미관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시·군·구 전문가(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 \*\*\*/ \*\*\*) 의 3명) 의견>

- 징검다리 설치 시 해류의 흐름에 영향이 있고, 모래톱 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발견된 화석의 수량이 상당하여 해안 또는 바다 밑에 잔존하는 화석이 있을 수 있음. 문화재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바. 참고자료 (현지조사 / 11.6)

<\*\*\* 문화재위원>

- 무인도인 여수 장사도 사업예정지는 해안의 자연경관이 매우 우수하며,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해안경관 보존과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개발사업은 허가되지 않아야 함.

<\*\*\* 문화재위원>

- 상기 사업은 백악기 공룡발자국과 이를 함유한 퇴적암층이 발달되어 있는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중도와 중도의 남동측에 위치한 장사도 지역을 잇는 콘크리트 징검다리과 장사도에 선박을 이용한 접안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임
- 사업이 이루어질 지역은 공유수면 지역으로 현상변경허용기준 구역 중 그 외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임
- 장사도 지역은 이 지역의 공룡발자국화석층 상위에 발달한 응회암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백악기말 한반도에 번성하였던 공룡들의 서식환경에 영향을 미친 격렬한 화산활동의 기록이 간직된 곳이며, 이와 함께 여수 낭도리 지역의 공룡발자국화석이 아시아에서 가장 후기의 공룡발자국화석 기록임을 지시해 줄 수 있는 암석이 분포하는 지역임
- 따라서 장사도 지역과 그 주변의 공유수면 지역이 비록 지정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낭도리 화석산지가 가지는 자연유산적 가치의 완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지역 또한 원래의 지질과 지형이 함께 보존되어야 할 지역임
- 중도와 장사도 사이를 잇는 콘크리트 징검다리의 경우, 이 지역의 해수 유동을 변화시켜 중도와 중도 사이에 발달되어 있는 특히 해빈(양면해빈)의 퇴적과 침식작용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곳의 원지형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함께 강한 폭풍이나 태풍에 의한 파도에 의해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동되면서 주변 암석에 대한 이차적 훼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 장사도 북서측에 계획된 부잔교 설치 또한, 이 지역의 해수 유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물론, 자연상태의 지형이 보존되어 있는 장사도의 경관과 주변 화석산지의 경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아울러 장사도는 무인도 지역으로 단지 접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

지역의 자연환경과 경관 훼손을 수반하는 토목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사회적 명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라 있는 낭도리 화석산지가 보유한 자연유산적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지질과 자연 경관을 훼손하는 토목시설의 설치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장사도 주변 공유수면 지역을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으로 조속히 지정하여 원지형을 보존해야 할 것임

### <\*\*\* 전남대학교 해양기술학부 교수>

- 사업자가 설치할 구조물은 크게 2종류로서 하나는 선박의 접안을 위한 ‘선착장 및 부잔교’ 시설물이며, 다른 하나는 ‘해양생물탐방로(징검다리)’ 구조물입니다. 이에 검토자는 2013년 11월 6일 사도, 낭도 및 추도를 현지방문 하였고 설치할 구조물의 계획을 살폈습니다. 이들 구조물과 관련하여 조류, 파랑, 퇴적물이동 그리고 구조물의 안정성과 관련한 해안공학적인 검토의 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획하는 ‘선착장 및 부잔교’의 설치에 따라 조류와 파랑과 같은 외력환경의 변화는 미미할 것이며, 이에 따른 모래와 같은 퇴적물이동의 변화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석 및 파랑에 의해 승강하거나 동요할 부잔교를 고정할 장치와 부잔교와 교량을 연결하는 도교의 이음부위 장치의 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태풍이나 폭풍의 내습시 ‘부잔교’와 ‘도교’가 교량도로와 분리되어 주변해역을 표류하다 주변의 공룡화석지에 충돌하여 공룡화석지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의 주변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약최고의 조석과 50년 빈도의 방향별 설계파에 대해서도 ‘선착장 및 부잔교’ 시설물은 안전해야 할 것이며, 이를 준수한 시설물의 재계획과 시공이 요구됩니다. 또한 부잔교와 도교의 규모에 따라 접안선박의 규모가 결정되므로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접안선박의 톤수와 접안속도에 관한 철저한 규제와 관리도 요구됩니다.
- ‘해양생물탐방로(징검다리)’는 “만조시 해수면위치보다 1.0m 낮게 시공(기존지반보다 0.5m 높게 설치, 큰 돌보다 낮게 설치)”한다고 하는데, 도면을 살펴보면 이 탐방로의 천단부는 만조위보다 높아 항상 해수면위에 노출되도록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설명과 그림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의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증도와 장사도 사이의 탐방로 설치구역은 간조시 수면위로 사석이 드러나고 만조시 주변사석이 모두 잠기는데, 어떻게 만조시 탐방로가 수면위에 드러나면서 탐방로를 큰 돌보다 낮게 설치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큰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실측높이는 얼마인지? 불명확하니, 정밀재측량하고 설계도면을 재작성해야 합니다.

- ‘해양생물탐방로(징검다리)’는 길이의 176m의 콘크리트 통수박스형 구조물의 교량구간과 길이를 알 수 없는 콘크리트 통수박스형의 징검다리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의 설치구간은 다양한 크기의 사석이 분포하고 그 하부는 모래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구조물 설치역과 주변은 모래로 구성된 사주로 이 섬의 명칭인 사도(沙島)와 의미가 통합니다. 이 구조물 설치공사중의 문제점은 구조물 설치를 위해 그 구간의 사석과 하부모래를 모두 제거해야하고 제거된 사석과 모래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므로, 이곳의 자연과 경관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징검다리 구간은 박스를 고정시키기기 위하여 하부토양에 말뚝을 박아야 하므로 오랜 세월동안 다져진 그곳의 토양은 항타작업에 의해 심하게 흐트러지게 됩니다. 이 영향으로 주변의 모래는 작은 외력에도 쉽게 이동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경관과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없는 환경이므로 공사 시 그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 ‘해양생물탐방로(징검다리)’ 구조물은 조류소통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이 정도 크기의 조류소통구는 설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래와 작은 사석 등으로 막혀 소통구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이 구조물은 소통 없는 구조물로 변하여 조류와 파랑의 변화를 유발시키며 이에 따라 주변 사주의 모래이동양상에 심각한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 ‘해양생물탐방로(징검다리)’의 176m 교량부분의 구조물은 징검다리과 달리 말뚝과 같은 지지장치 없이 자체무게에 의해 유지되는 구조물입니다. 이 구조물의 설치역은 사석이 존재하는 구간이므로 바로 옆의 사주구간과 달리 파랑작용이 극심한 곳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중력식 구조물은 태풍과 같은 고파랑시 파압과 그 모멘트에 의해 활동과 전도에 의한 파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파괴가 발생하면 이 구조물은 주변해안에 위해를 가할 것이므로, 50년빈도의 설계파에 대해 이 구조물의 안정성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해양생물탐방로(징검다리)’ 구조물은 재료가 콘크리트로서 자연현상적으로 그 선단부분은 세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세굴이 발생한 구조물은 침하되거나 그 뼈대가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경관을 헤치거나 파괴될 것입니다. 이 세굴현상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요구됩니다.
- ‘해양생물탐방로(징검다리)’는 바다와 항상 접하므로 해양의 조류와 이끼류가 끼어 보행이 힘들 정도로 미끄러워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안전장치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 결론적으로 해안공학적 관점에서 판단하면, ‘선착장 및 부잔교’ 시설은 해

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구조물의 고정장치와 연결장치가 전무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양생물탐방로(징검다리)’ 시설은 공사 시 및 공사 후 주변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지적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이 구조물을 설치하여도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으로 판단하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 의결사항 : 부결

## 14. 「무등산 주상절리대」 내 훼손 탐방로 정비

### 가. 제안사항

「무등산 주상절리대」 내 훼손 탐방로 정비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무등산 주상절리대」 내 훼손 탐방로 정비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65호 「무등산 주상절리대」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산354-1 / 전남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산96
    - 지정일 : 2005. 12. 16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무등산국립공원 훼손 탐방로 정비(탐방객 안전시설 설치)
  - 사업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산354-1 일원(서석대)
  - 사업내용
    - 기존 탐방로 보수 : 2007년 설치된 데크시설(L=60m, B=1.5m) 및 안전난간 훼손부위 보수·정비
    - 신규 데크 전망대 2개소(31.15㎡/41.56㎡) 설치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 라. 검토의견(\*\*\*\*\*)

- 동 사업은 무등산국립공원 서석대 일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에 의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주변 식생 및 주상절리 상부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서 신규로 설치되는 데크 전망대 2개소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마. 참고자료(현지조사/‘13.10.28/11.15)

### <\*\*\* 문화재위원>

- 무등산 입석대와 서석대 일대는 천연기념물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급격한 관람객의 증가로 주변 훼손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필요한 곳에는 최소한의 관람로 정비, 안전시설, 전망대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이미 입석대와 서석대에는 주상절리의 훼손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음.
- 기존의 탐방로 정비, 안전난간 설치, 전망대 2개소는 관람객들이 출입금지 지역을 임의로 드나드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설치하여도 좋을 것임.

### <\*\*\* 문화재위원>

- 상기 사업지역은 주상절리가 나타나는 무등산 입석대에서 서석대로 연결되는 남-북 방향의 능선을 따라 이어져 있는 탐방로 중간 지역에 위치해 있음
- 이 지역 주변의 지표는 대부분 초본식물 등으로 덮여 있는 가운데에 이 지역의 기반암인 중생대 백악기의 화산암이 대체적으로 1 m 이하의 높이를 가지며 국부적으로 산재하여 노출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주변 시계가 트여 있는 상태임
-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일부 탐방객들에 의한 주변 식생 지역으로의 침범으로 훼손이 이루어지고, 이와 함께 일부 과도한 탐방행위로 인하여 탐방객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지역임
- 따라서 이 사업은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기존 탐방로 데크의 서측부 일부 중 능선부에서의 경사가 비교적 급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2개 지점에 기존 데크를 축으로 하여 2개의 전망데크(각각의 면적: 31.15 m<sup>2</sup>, 41.56 m<sup>2</sup>)를 설치하는 것임
- 사업 지역의 바닥과 주변에는 암반이 국부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나, 특이성을 가지는 지질기록이나 지형은 발달되어 있지 않음
- 이 사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망데크의 규모와 형태, 높이, 소재 등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한 서석대와 그 주변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 사업으로 인한 이 지역의 전반적인 지질과 지형 특성, 경관 등의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15. 「밀양 월연대 일원」 주변 밀양강 하천 환경정비사업

### 가. 제안사항

「밀양 월연대 일원」 주변 밀양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13년 11차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현지조사 후 재심의하기로 한 신청건으로 「밀양 월연대 일원」 주변 밀양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 재심의 요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87호 밀양 월연대 일원
  - 소재지 : 경남 밀양시 용평동 1-0 일원
  - 지정일 : 2012.2.8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밀양 월연대 일원」 주변 밀양강 하천환경정비사업
  - 사업위치 : 경남 밀양시 활성동 등
  - 사업내용 :
    - 목적 : 국가하천인 밀양강을 4대강 본류수준으로 치수안전도를 확보하여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이상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하천을 생태, 문화, 여가 공간이자 지역명소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 공사내용
      - 축제공 L=1,411m(흙쌓기 103,882m<sup>3</sup>, 사토운반 122,157m<sup>3</sup>)
      - 호안공 L=2,291m(식생블럭 L=1,411m : 15,722m<sup>3</sup>, 케비온매트리스 L=880m : 7,486m<sup>3</sup>)
      - 하도정비공 L=880m(절토 121,533m<sup>3</sup>)
      - 하천환경정비공 L=880m(준설54,000m<sup>3</sup>)
      - 산책로 설치 : 1,511m, 자전거길 7,510m
      - 교량공 1개소 : 현재 B=10.5m L=213m, 계획 B=11.7m L=300m
      - 구조물공 : 배수시설공 1식, 수로공 1식, 파라펫공1식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4. 3. 28일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 및 인접
  - 현상변경 허용기준 : 제1구역(원지형보존)

### 라. 검토의견 (\*\*\*\*\*)

- 밀양 월연대 일원의 문화재구역 내 하천 지역을 제방쌓기 축제공·호안공(식생블럭 및 케비온매트리스)은 현재 자연하천으로 형성된 밀양강 자연경관을 훼손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연친화적 소재를 사용한 공법으로 변경.
- 또한 하도정비시 월연대 맞은편의 하도변 하상의 모래 및 자갈은 준설을 현재 상태로 원형유지하여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며, 월연대 쪽의 하상은 '월연'의 원래의 의미를 살려 하도준설을 함이 타당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의견 : '13.11.7)

<\*\*\* 문화재위원>

- 용평1지구 하천정비 사업계획 중 후면에 조성하는 공원시설부분은 별 문제 없는 사업으로 판단됨.
- 단, 하상의 퇴적토 및 자갈을 준설하는 것은 밀양강 상류 및 단장천 전체의 준설계획을 함께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월연대를 위주로 하는 전통적인 하천경관을 고려하여 준설작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문화재위원>

- 본 공사는 밀양강 용평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월연대 앞으로 흐르는 밀양강의 수심을 높여 주변에 있는 마을들의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월연대 건너편 하도 변을 준설하는 것임.
- 월연대는 '명승 제 87호: 밀양 월연대 일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로서 경남의 별서원림 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지이며, 준설하고자 하는 하도 변은 원지형 보존을 위한 1구역에 속해 있음.
- 현재 월연대 일원에 대한 복원·관리 계획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음. 이러한 계획은 물론이고 현재 진행 중인 밀양강 남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계획에 의하면 월연대에서 내려다보이는 하중도는 제거하고 월연대 좌측으로는 '이연'이라는 연못을 과거의 상태로 복원하려고 함.
- 해당 문화재를 중심으로 보면 용평 1지구 사업과 남기지구 사업은 인접 또는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들 사업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문화재 자체와 그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할 것임.

<\*\*\* 문화재위원>

- 도로 겸용 제방 축조와 기존도로 및 그 주변의 건물(음식점, 골프 연습장 등등) 정비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되 제방 주위에는 나무를 심어 월연정에서 바라보았을 때 제방이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하도정비구간의 사력층 제거(준설)는 월연정 주변 일대의 하천정비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력층 제거의 규모가 산출되어야 함(별지의 보충 설명 참조).
- 제거할 사력층의 규모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여 산출되어야 하며, 현상변경 허가 신청시 그 자료(산출근거)를 제출하여야 함.





- ① A지역의 정비는 사업계획대로 실시함.
- ② B지역은 하안에 퇴적된 자갈층으로서 가능한 한 자연상태대로 보존되어야 월연정에서 바라보는 자연경관이 더욱 돋보일 것임.
- ③ C, D구역의 퇴적층은 준설하고, B구역의 퇴적층은 보존했을 경우, 홍수 조절은 어느 정도가 되며, 준설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모의실험을 통하여 검토되어야 함.
- ④ 또한 기대하고 있는 홍수조절 효과를 얻으려면 B, C, D구역의 퇴적층이 어느 정도나 준설되어야 하는 것인지도 모의실험을 통하여 산출하여야 함.

#### 바. 참고자료(\*\*\*) 의견)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 건으로, 사업대상인 하천은 명승 " 밀양 월연대 일원" 과 맞닿아 있는 하천임. 사업대상지 일원이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따른 1구역(원지형구역)에 해당되므로 현상변경 허가를 요함.

#### 사.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16. 「부산 영도 태종대」 주변 주차장 확장공사

### 가. 제안사항

「부산 영도 태종대」 주변 제7 주차장 조성 확장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부산 영도 태종대」 주변 제7 주차장 조성 확장공사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부산시설공단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17호 부산 영도 태종대
  - 소재지 : 부산 영도구 동삼동 1005번지 일원
  - 지정일 : 2005.11.1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부산 영도 태종대」 주변 제7 주차장 조성 확장공사
  - 사업위치 : 영도구 동삼동 1009/1009-3,4,6,9,12,14,15/1010-3
  - 사업내용
    - 사업부지 : 주차장 조성면적 12,050m<sup>2</sup>(411면))
    - 사업비 : 16억원
  - 사업기간 : 허가일 ~ 2014. 12. 31.
- (4) 문화재와의 거리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지정구역 인접)

### 라. 검토의견(\*\*\*\*\*)

- '부산 영도 태종대 주변 제7주차장 조성 확장공사'는 관람객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확장이 필요한 사업이나, 일부 문화재구역이 포함된 산지(90m<sup>2</sup>)는 주차장 부지에서 제외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의견 / '13. 10. 18)

<\*\*\* 문화재위원>

- 상기 신청 건은 2006년의 입장료 무료화 이후 탐방객의 급증(2012년: 1,987,524명)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승용차 주차장(405면) 서측배후의 저경사 비탈면에 유사규모(411면)와 형태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임
- 사업 대상지의 대부분은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부산광역시 도시계획 등 관련법 적용)에 해당하며, 북측과 서측 일부가 문화재구역에 해당함
- 사업 대상지는 대부분 담으로 이용되던 지역으로 원지형이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주차장 부지와 소나무 군락으로 이루어진 배후 산지와 경계부에는 군사목적의 철책이 설치되어 있음
- 상기 철책의 안쪽 산지는 원지형과 식생이 보존된 상태이나, 철책의 바깥쪽(즉, 주차장 부지의 대부분)은 경작 등에 의해 대부분 평탄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임
- 따라서 주차장 조성으로 인한 이 지역의 지형과 경관훼손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차장 조성부지의 남동측 일부가 철책 안쪽의 산지(문화재구역)를 점하고 있어, 해당 구역을 주차장 조성부지에서 제외시켜, 이 지역의 원지형과 식생을 보존토록 해야 할 것임

바. 참고자료(\*\*\*\* 의견)

- 태종대 유원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이용시민 불편해소 및 국가지정 문화재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문객 편의 주차장 조성공사가 절실함.

사.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검토사항】

천기 2013-11-17

### 17. 「장수 장수리 의암송」 주변 장수군청 증축계획 검토

#### 가. 제안사항

「장수 장수리 의암송」 주변 노후된 장수군 청사를 증축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장수 장수리 의암송」에 인접해있는 노후된 장수군 청사를 증축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장수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397호 장수 장수리 의암송
  - 소 재 지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번지
  - 지 정 일 : 1998.12.23.
-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수군 청사 건립(증축)
  - 사업위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번지(현 청사부지)
  - 사업내용 : 장수군 청사 증축(3층)
    - 사업내용 : (군청사) 7,520㎡(증축 5,461㎡, 리모델링 2,059㎡)  
(군민회관, 평생학습관) 1,000㎡(증축)  
(지하주차장) 3,000㎡(증축 2,552㎡, 리모델링 448㎡)
  - ※ 건축물 층고는 기존과 동일하나 높이가 변경됨(3층 : 11m → 14m)
  - \* (1구역) 3층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에 인접(1구역)

#### 라. 검토의견 (\*\*\*\*\*)

- 동 사업은 장수 장수리 의암송과 인접한 장수군 청사를 일부 이격(15m이상) 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증축 층고는 현재가 같은 3층으로 같으나 건물높이를 일부 높이고자 하는 계획으로, 건물 증축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18. 「정읍 내장동 단풍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정읍 내장동 단풍나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산 벽련암에 있는 단풍나무의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검토하는 사항임.
- \* 단풍나무 지정현황 : 고창 문수사 단풍나무 숲(천연기념물 제463호, '05.9.9 지정)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전라북도지사
- (2) 신청내용
  - 지정명칭 : 정읍 내장동 단풍나무(정읍 벽련암 단풍나무)
  -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식물-노거수)
  - 소재지 :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동 576번지
  - 소유자 : 대한불교조계종 내장사
  - 주요현황 : 1주, 수령 약300여년 추정

수관폭(W)		수고(H)	근원둘레(R)
동서	남북		
15m	17m	15.0m	7.2m

- 수형 및 외관
  - 줄기는 지상 약 1.1m 정도에서 5개로 갈라졌으나 이 가운데 중앙의 1개는 절단되어 고사된 상태로, 현재는 4개만 남아있음. 참고로, 분지된 가지의 규격은 동쪽 1.35m, 서쪽 1.3m, 남쪽 1.7m, 북쪽가지 2.2m로 북쪽가지가 가장 굵으며, 이 북쪽가지는 분지부위 바로 위쪽에서 다시 남북방향으로 분지되어 있음.

- 수관은 크게 발달했으며, 지엽밀도도 정상으로 보이나 잎의 크기는 단풍나무의 평균적 크기보다 다소 작고 나무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상태로 보였음. 특히 남쪽과 서쪽 가지에서 분지한 가지 각각 1개씩이 고사 또는 고사중인 상태로 보였음.

#### ○ 주변 생육환경

- 이 단풍나무는 내장산 서래봉 중턱에 자리한 1,300여년 고찰인 벽련암 앞마당 동쪽 구석에 위치해 있음.
- 나무 주변에는 물푸레나무과의 조경용수인 목서류가 한 그루 있을 뿐 다른 큰 나무가 없기 때문에 생육경쟁의 우려는 없음. 다만, 나무의 남쪽이 약 1m거리에서 높은 수직 석축으로 끊겨 있어서 이 방향의 근부 발달에 영향이 우려되며, 동쪽 약 6m 거리에도 약 2m 높이의 석축을 쌓고 절토하여 작은 연못을 조성해 놓았음.
- 나머지 서쪽과 북쪽은 절집 마당으로 이어져 있어서 별다른 방해 요인이 없으나 표토가 심하게 경화되어 있고, 나무의 근원 주위에 반경 약 3m 정도 반원형으로 자연석으로 경계석을 놓고 그 안쪽 표토를 약 20cm 깊이로 제거했으나 강우시를 고려한 배수도가 없음.

#### ○ 유래 및 전설

- 내장산이 단풍으로 유명한 산이기 때문에, 내장산 지역에서 가장 수령이 오래되고 규격이 큰 이 단풍나무는 지역의 생물학적·문화적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우수한 노거수로 판단되며, 수형이 단정하고 형태가 수려하며 단풍나무로는 비교적 웅장한 규모임.
- 이 단풍나무가 있는 벽련암은 백제 의자왕 20년인 서기 660년, 유해스님이 창건하고 백련사(白蓮寺)로 불려왔으나 후에 추사 김정희가 벽련사(碧蓮寺)라는 현판을 쓰고, 개명할 것을 제안하면서 벽련사로 부르게 되었다고 하며, 이 벽련사가 언제부터 벽련암으로 격하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함.
- 그러나 경내의 이 단풍나무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전해지는 유래나 전설이 알려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음.
- 다만, 이 단풍나무와 관련해서 벽련암 측에서는 이 단풍나무가 오랜 기간 절집의 마당 한편을 지켜왔고, 언제부터인가는 이곳에서 수행생활을 하는 승려들의 수행과 휴식의 반려가 되어주는 귀중한 절집 일부라고 여기고 있다고 함.

## 라. 검토의견(\*\*\*\*\*)

- 정읍 내장산 단풍나무는 규모가 크고 수형이 우수하며,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에 위치한다는 지역문화적 특징 등의 가치는 있으나, 현재 수세가 약해진 상태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식물)로 지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마. 전문가 조사의견(현지조사 의견 / 2013.10.31.)

### <\*\*\* 문화재위원>

- 이 단풍나무는 수목의 수령, 규격 및 상징성, 지역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할 때, 천연기념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대상으로 판단됨.
- 그러나, 현재의 건강상태를 감안할 때, 수목보존을 위한 개선사업을 시행한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고사 등의 위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 문화재위원>

- 이 단풍나무의 규격(수고 15m, 흉고둘레 7.2m, 수관폭 약16m)은 느티나무 등 대교목에 비하면 월등히 작지만 단풍나무로서는 대표성이 충분할 뿐 아니라 문화적 가치도 있음.
- 내장산 일원은 다양한 종류의 단풍나무가 군집을 이루고 있어서 오래전부터 단풍철이면 전국에서 많은 탐방객이 몰려오는 유명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최근 정읍시에서는 이 단풍나무를 상징하는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있음.
- 다만 단풍나무의 수세가 양호한 상태로 볼 수 없고 일부 복토를 제거하였지만 전문가에 의해 시행된 것이 아니므로 뿌리상태 등 건강문제가 의심됨.
- 따라서 관련된 유래나 전설 등 문화적 자료가 발굴되고, 수세의 회복이 이루어진 이후까지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의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 前 문화재위원>

- 내장산의 내장사 일원은 단풍나무와 당단풍, 내장단풍, 애기단풍, 털단풍 등 다양한 종류의 단풍나무가 큰 군집을 형성하고 있어서 오래전부터 이 지역의 상징이 되고 있고 단풍철이면 전국에서 많은 탐방객이 몰려오는 유명 관광지가 되어 있음.
- 더구나 최근 정읍시에서는 이 단풍나무 군집을 자원으로 한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계획중이거나 운용중에 있음. 이번에 정읍시가 이 지역에서 크고 오래된 단풍나무 노거수 1주를 발굴하여 문화재 지정을 요청하게 된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이곳의 단풍나무를 국가적 자연유산으로 지정 보호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될 뿐 아니라 나무의 규모나 수형 등에서 충분히 대표성이 인정되는 가치 있는 자연유산이라고 판단됨.
- 그러나 이 단풍나무는 식물학적 대표성 외에 문화적 가치를 인정할만한 사항들이 부족하며, 북쪽가지(줄기둘레 2.2m)의 밑동부와 나머지 부분이 서로 다른 개체의 유합이 아닐까 의심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나무의 잎 크기가 작은 점 등 나무의 건강문제도 의심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단풍나무 잎의 크기는 평균 길이가 5~6cm이나 이 벽련암 단풍나무의 잎 길이는 아래쪽의 잎이 4.5cm 정도임.
- 따라서 이 단풍나무는 관련된 유래나 전설 등 문화적 자료가 발굴되고, 단일 수간인지의 여부에 대한 과학적 입증과 수세의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당분간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의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바. 의결사항 : 부결



## 19.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주변 공룡발자국 화석 보존방안 검토

### 가. 제안사항

반구대 암각화 주변 발굴조사 현장에서 발견된 공룡발자국 화석에 대한 보존 방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주변 발굴조사 현장에서 발견된 공룡발자국 화석의 보존방안을 검토하는 사항임
- 추진 경과
  - 2013. 8.30~ 반구대 암각화 주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국립문화재연구소)
  - 2013.10.21 반구대 암각화 전면부 하상 암면에서 공룡발자국 화석 17점 발견
  - 2013.10.23 발견된 화석 확인 및 현지조사(자연문화재연구실)
  - 2013.11. 6 주변 유적 발굴조사 관련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매장분과)
    - 발굴조사결과 공룡발자국으로 추정되는 공룡화석 50여개가 확인되었는바 『화석지 보존·관리지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치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 2013.11. 7 관계 전문가 1차 현지조사(\*\*\* 위원\*, \*\*\* 문화재위원)
    - 발굴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암반이 노출되고 공룡발자국이 추가적으로 산출되고 있으므로 암반 노출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후 공룡발자국 화석의 산출 특성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2013.11.19 관계 전문가 2차 현지조사(\*\*\*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2) 주요내용

○ 공룡발자국 화석산출지 현황

- 산출지역 : 암각화 집중 암면 중심으로부터 북동쪽 10~32m와 북서방향 14m 사이, 해발 48~51m 암면 최소 10개 층준에서 화석 확인

- 발자국 화석 산출 양상
  - 주로 용각류와 조각류 초식공룡 발자국 70여점 산출
  - 최소 3마리 이상의 용각류에 의해 형성된 보행렬 3열이 관찰되며, 여러 크기의 조각류 공룡 발자국도 다수 발견됨.
  - 풍화와 마식작용에 의한 영향으로 대부분의 공룡발자국의 형태는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으나, 일부 조각류 공룡발자국의 발가락 형태는 잘 나타남. 용각류 및 조각류 공룡발자국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지점도 여러 곳에서 발견됨
- 화석 보존 방안 :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대로 발견된 발자국 화석에 대한 기초학술자료(3D 촬영, 맵핑 등) 확보 후 발굴 이전의 상태로 복토하여 보존

#### 라. 현지조사 검토의견(2013.11.19)

#####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공룡발자국화석은 암각화 암면 하위 퇴적암층의 10여개 층준에서 산출되었음
- 현장에서 확인된 공룡발자국화석의 대부분은 국부적으로 노출된 성층면에서 관찰되며, 일부는 퇴적암층의 단면에서 확인됨
- 공룡발자국화석을 함유한 퇴적암층은 대체적으로 사암 내지 셰립사암에서 이암으로 접이되는 범람기원 퇴적암층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암석에서는 연흔과 건열이 흔히 나타남
- 이와 같은 이 지역 퇴적암의 퇴적특성은 이 지역 지층과 대비되는 경상분지 함안층의 공룡발자국화석층과 유사한 암질 및 고환경적 특성을 보임
- 이들 퇴적암은 대체적으로 열변성을 받아 호온펠스질을 띠나, 일부 암석은 석회질을 띰
- 공룡발자국화석의 종류는 용각류, 조각류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최소 4~5개의 보행렬이 확인됨
- 성층면에서 관찰되는 공룡발자국화석의 대부분은 원래의 공룡발자국화석면 아래에 보존된 하흔(下痕, underprint)으로 여겨지며, 일부는 발자국을 충진한 캐스트의 양상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하흔성 산출특성과 함께, 노출된 암반이 이 지역 하상을 흐르던 유수에 의해 마식작용을 받아 공룡발자국의 인상은 뚜렷하지 않은 편이나, 이 중 일부 조각류 발자국화석은 발자국의 형태를 뚜렷이 보여 줌
- 이상에서와 같은 이 지역 공룡발자국화석의 산출특성과 공룡발자국화석층의 암질특성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암각화 암면 하위 암층에서 새로이 발견된 공룡발자국화석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조사자료를 확보한 이후에, 이 면을 퇴적물로 덮어 발굴 이전의 자연상태로 보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고사항】

천기 2013-11-20

### 20. 2013년 천연기념물·명승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 보고

#### 가. 제안사항

2013년도 천연기념물·명승지역 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추가 예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사항을 보고합니다.

#### 나. 제안사유

- 2013년 제주도 및 남부지방에 확산되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비하여 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역의 보존·관리를 위한 긴급보수사업비 예산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사업의 시행은 시행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신청(사업설계 등)에 대하여 문화재청 및 필요시 관계전문가 검토를 받아 승인·추진하고자 함.
- 확정사업 중 사업지침, 사업내용 등 변경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문화재청 승인을 거쳐 시행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명승
- (3) 신청내용

- 2013년도 천연기념물·명승 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제주특별자치도		경남 하동시	
		서귀포시	제주시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예산	773	582	107	84
	대상	15개소	산방산(명승77) 등 9개소	어음리 빌레못 동굴 (천기236) 등 5개소 * 사적 1개소	하동송림 (천기445) -수간주사

####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 21.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23건)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243-1호 독수리 제323-1호 참매 제330호 수달 제323-8호 황조롱이 제24-2호 수리부엉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 환경부 국립생태원법인화추진단</li> <li>○ 허가사항 : 사육(교육 및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난 구조된 개체로 재활이 불가능한 개체</li> </ul> </li> <li>○ 허가기간 : 2013. 10. 22. ~ 2018. 10. 21.</li> <li>○ 개체수 : 독수리1, 참매1, 수달 2개체, 황조롱이1, 수리부엉이 1</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202호 두루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 고양시장</li> <li>○ 허가사항 : 사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대공원에서 인수</li> </ul> </li> <li>○ 허가기간 : 2013. 10. 31 ~ 2018. 10. 30.</li> <li>○ 개체수 : 두루미 1개체</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장</li> <li>○ 허가사항 : 사육(증식 및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난 구조된 개체로 재활이 불가능한 개체</li> </ul> </li> <li>○ 허가기간 : 2013. 11. 19 ~ 2018. 11. 18.</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201-2호 큰고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기념물 제201-2호 큰고니(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li> <li>-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li> </ul> </li> </ul>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405호 의성 사촌리 가로숲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 의성군수</li> <li>○ 허가사항 : 가옥 피해 위험 수목 제거(1주)</li> <li>○ 사업내용 : 위험 수목 제거 1주</li> <li>○ 허가기간 : 2013.11.07. ~ 2013.12.31.</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404호 영천 자천리 오리장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 영천시장</li> <li>○ 허가사항 : 하수관거 굴착 및 매설, 하수처리장 설치 등</li> <li>○ 허가조건 : 하천 절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굴착시 유의하여 시공하며, 하수처리장 주변 조경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시</li> <li>○ 허가기간 : 2013.11.25. ~ 2014.06.30.</li> </ul>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장</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염소투입시설 신축</li> <li>- 사업위치 : 제주도 제주시 해안동 산60번지 8호</li> <li>- 사업내용 : 어승생 수원지 염소투입시설 신축 (1층, 건축면적 105.6㎡, 철근콘크리트조)</li> </ul> </li> <li>○ 허가기간 : 허가일 ~ 2013.12.31.</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강릉국토관리사무소</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낙석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li> <li>- 사업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4번지 외</li> <li>- 사업내용 : 국도44호선(한계지구) 낙석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길이 60m, 면적 985.3㎡)</li> </ul> </li> <li>○ 허가기간 : 허가일 ~ 2014.4.30.</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시행으로 문화재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li> <li>- 외부 식생이 유입되지 않도록 범면녹화 시 현지 자생종을 사용</li> </ul> </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162호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서귀포시장</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재난예방용 CCTV 설치</li> <li>-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2672-1</li> <li>- 사업내용 : 재난예방(하천감시용)을 위한 CCTV 1기 설치</li> </ul> </li> </ul>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기간 : 허가일 ~ 2014.2.28.</li> </ul>	
	천연기념물 제464호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장</li> <li>○ 허가사항 : 제주시 대정읍 신수이동 해안로 지중화사업(전선 지중화)</li> <li>○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번지 1호</li> <li>○ 사업내용 : 전기관로 283m 매설</li> <li>○ 허가기간 : 2013.11.18~2013.12.31</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466호 제주 용천동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제주시장</li> <li>○ 허가사항 : 월정 6지구 받기반 정비사업(급수관로 부설)</li> <li>○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일원</li> <li>○ 사업내용 : 급수관로 1조(L=865m, D=90mm) 매설</li> <li>○ 허가기간 : 2013.11.18~2013.12.31</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414호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화성시장</li> <li>○ 허가사항 : 화석산지 내 CCTV 설치공사</li> <li>○ 사업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산 6번지</li> <li>○ 사업내용 : CCTV 4개소(높이 4m) 설치</li> <li>○ 허가기간 : 2013.11.18~2014.1.31</li> </ul>	<허가>
	명승 제106호 강릉 용연계곡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 강릉국유림관리소장</li> <li>○ 허가사항 : 강릉 용연계곡 일원 내 수종갱신 사업</li> <li>○ 사업위치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산 1번지</li> <li>○ 허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면적 : 12ha</li> <li>- 벌채 : 활엽수 중 폭목, 부후목, 맹아목 등 형질 불량목 649본(ha당 54본)</li> <li>- 조림 : 면적 12ha 36,000본(묘령 1-1)</li> </ul> </li> <li>○ 허가기간 : 2013-11-05일로부터 2014-09-30</li> </ul>	<허가>
	명승 제15호 남해 가천마을 다랭이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 남해 가천마을 다랭이논 보존회</li> <li>○ 허가사항 : 남해 가천마을 다랭이논의 다랭이마을 자연돌담 석축사업</li> <li>○ 사업위치 : 다랭이 마을 입구</li> <li>○ 허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담 총길이 100m(높이 1.2m, 폭 0.6m)</li> </ul> </li> <li>○ 허가기간 : 2013-11-11일로부터 2013-12-31</li> </ul>	<허가>
	명승 제21호 공주 고마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 공주시장</li> <li>○ 허가사항 : 고마나루 명승길 쉼터시설 설치공사</li> <li>○ 사업위치 : 공주시 웅진동 326번지</li> <li>○ 허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한식 기와목구조 팔각정자(가로6.6m*세로6.6m*높이4.5m)</li> </ul> </li> </ul>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4.03.31일까지</li> </ul>										
	명승 제10호 삼각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 **라인(주)</li> <li>○ 허가사항 : 이동통신용 무인기지국 설치</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북한동 산1-1번지 일원 등</li> <li>- 규모 : 설치면적 20㎡, 이동통신용 소파형 강관주1개소 설치: 높이 15m</li> </ul> </li> <li>○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4.03.31.</li> <li>○ 조건부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크리트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할 것</li> </ul> </li> </ul>	<조건부 허가>									
	명승 제43호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 서귀포시장</li> <li>○ 허가사항 : 정방폭포 매표소 증축</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277번지</li> <li>- 규모 : 건축면적 54.90㎡, 연면적 47.53㎡, 기존면적 38.70㎡, 증축면적 8.83㎡</li> </ul> </li> <li>○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4.02.28.</li> </ul>	<허가>									
	명승 제79호 제주 서귀포 외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 서귀포시장</li> <li>○ 허가사항 : 외돌개 산책로 보안등 교체</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336-1</li> <li>- 규모 : 기존 기둥형 보안등 철거 1식 인조현무암 지면밀착형 LED 보안등 143개소</li> </ul> </li> <li>○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4.02.28.</li> </ul>	<허가>									
	명승 제28호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 삼척시장</li> <li>○ 허가사항 : 자전거교육장 설치</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강원 삼척시 원당동 22번지</li> <li>- 규모 : 경량철골구조 지상 1층, 신청면적 911㎡, 연면적 129.6㎡, 건축면적 129.6㎡</li> </ul> </li> <li>○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4.04.30.</li> <li>○ 조건부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외관은 주변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색상을 선택하여 시공</li> </ul> </li> </ul>	<조건부 허가>									
허가사항 변경 허가	명승 제28호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 삼척시장</li> <li>○ 허가사항 : 삼척죽서루 삼척시립박물관 수장고 1층 증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40%;">변경전</th> <th style="width: 40%;">변경후</th> </tr> </thead> <tbody> <tr> <td>삼척시립박물관 수장고 1층 증축</td> <td>-철근콘크리트구조, 증축 면적 : 261.96㎡</td> <td>- 좌동</td> </tr> <tr> <td>허가기간</td> <td>2013.9.2~2013.12.31</td> <td>2013.9.2~2014.7.31</td> </tr> </tbody> </table>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삼척시립박물관 수장고 1층 증축	-철근콘크리트구조, 증축 면적 : 261.96㎡	- 좌동	허가기간	2013.9.2~2013.12.31	2013.9.2~2014.7.31	<허가사항 변경 허가>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삼척시립박물관 수장고 1층 증축	-철근콘크리트구조, 증축 면적 : 261.96㎡	- 좌동										
허가기간	2013.9.2~2013.12.31	2013.9.2~2014.7.31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기간 : 2013.9.2~2014.7.31</li> </ul>										
	명승 제16호 예천 회룡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 예천군수</li> <li>○ 허가사항 : 예천 회룡포 내 섯다리 설치</li> <li>- 내용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구분</th> <th style="width: 33%;">변경전</th> <th style="width: 33%;">변경후</th> </tr> </thead> <tbody> <tr> <td>회룡포 내 섯다리 설치</td> <td>           - 기존 제2뿡뿡다리            철거 L=162m            - 섯다리설치 L=162m            (면적: 143㎡)         </td> <td>- 좌동</td> </tr> <tr> <td>허가기간</td> <td>2013.6.28~2013.10.31</td> <td>2013.6.28~2014.3.31</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기간 : 2013.6.28~2014.3.31</li> </ul>	구분	변경전	변경후	회룡포 내 섯다리 설치	- 기존 제2뿡뿡다리 철거 L=162m - 섯다리설치 L=162m (면적: 143㎡)	- 좌동	허가기간	2013.6.28~2013.10.31	2013.6.28~2014.3.31	<허가사항 변경 허가>
구분	변경전	변경후										
회룡포 내 섯다리 설치	- 기존 제2뿡뿡다리 철거 L=162m - 섯다리설치 L=162m (면적: 143㎡)	- 좌동										
허가기간	2013.6.28~2013.10.31	2013.6.28~2014.3.31										
	천연기념물 제170호 홍도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신안군수(홍도관리사무소)</li> <li>○ 허가사항</li> <li>- 사업명 : 홍도내항 호안침식 보강 포장공사</li> <li>- 사업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공유수면</li> <li>- 사업내용 : 포장공사 290㎡(콘크리트 포장 73㎡ 등)</li> </ul> <변경허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기간 연장</li> <li>- (당초) 허가일~2013.11.8. → (변경) 허가일~2014.2.28.</li> </ul>	<허가사항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동부지방산림청장</li> <li>○ 허가사항</li> <li>- 사업명 : 산사태 예방사업</li> <li>- 사업위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5</li> <li>- 사업내용 : 사방사업(자연석 골막이 1개소, 기슭막이 및 바닥막이 등)</li> </ul> <변경허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기간 연장</li> <li>- (당초) 허가일~2013.11.30. → (변경) 허가일~2014.9.30.</li> </ul>	<허가사항 변경허가>									

나. 의결사항 : 원안접수